

성남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

(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)
(제정) 2024.01.15 규칙 제203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성남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공약사항”이란 성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으로서 취임 후 제4조에 따라 확인한 것을 말한다.
- “공약사업”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“총괄부서”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“주관부서”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.
- “협조부서”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관리체계) 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관리 부서로 하며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, 총괄 관리,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.

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.

제4조(공약사항의 확정) 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보물, 선거공약서,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 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법률적 검토(조례 제정·개정 포함)
- 임기 내 실천가능성(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)
-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

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,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,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천계획 수립) ①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(이하 “실천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,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,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
-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·보완할 수 있다.
- 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성남시 홈페이지(이하 “홈페이지”라 한다)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천계획 변경)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-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공약 이행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④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약이행 관리)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.

제8조(외부평가) 총괄부서의 장은 외부단체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참여하며,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한다.

제9조(평가결과 환류)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장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을 모색하여야 한다.

- ② 평가 결과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수공무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0조(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약 이행평가단(이하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시장은 위촉, 추천,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.
-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시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.
- ⑤ 평가단의 구성·운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평가단 기능 및 평가시기) ① 평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
2.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·변경에 대한 적정성 평가

3. 우수공약 평가

② 공약이행의 평가는 연 2회 시행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공개)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, 공약사업 실천계획, 실천계획의 변경사항, 추진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부칙<제정 2024.1.15., 조례 제203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성남시 매니페스토평가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성남시 공약이행평가단으로 본다.